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78

발의연월일: 2024. 10. 7.

발 의 자:조승래·윤종군·윤호중

이정문 • 홍기원 • 노종면

박상혁 • 이기헌 • 박홍배

박용갑 · 장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이 발생하고, 신규 설립 등이 어려워 특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중	제5조(학교의 병설) <u>초등학교・중</u>
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	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정에 따라 상호 병설(並設)할	
수 있다.	